

1996년 12월 일

조례 폐지 및 개정 제안안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1.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계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폐지 이유

- 새마을 청소년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새마을 청소년회 업무가 농촌진원으로 이관되고 장학금 기금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 하려는 것임

- 4 -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폐지이유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하여 제정한 조례가 남구 분구로 인하여 남구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6 -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폐지 이유

-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공중위생법에서 관련된 조항 삭제와 먹는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계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폐지이유

-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계분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가 양곡 관리법 개정예 따라 규모이하 계분업은 따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은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계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계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 이유

- 우리구의 조직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구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함

□ 주요 골자

- 조직개편에 따른 관직명 변경 (제4조)
 -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 의료보호법에의한 카드 명칭 변경 (제7조)
 - '의료보호대상자카드' 를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카드'
- '지방세 징수' 를 '지방세 체납처분' 으로 개정 (제8조)

□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 의료보호법 제17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의료보호대상자카드' 를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카드' 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지방세 정수' 를 '지방세 제납처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관은 구의 <u>사회과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p>	<p>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 -----<u>사회복지과장</u>----- -----</p>
<p>제7조 (지출) ① 기금운요관은 보호대상 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 이 의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 을 검토 조성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 을 구분 결정한 후 <u>의료보호대상자 카드</u> 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 는 제1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납인고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7조 (지출)----- ----- ----- ----- -----<u>의료보호대불금 상환카드</u>----- ----- -----</p>
<p>제8조 (대불금 상환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의 단서에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u>지방세 징수</u>'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p>	<p>제8조 (대불금 상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지방세 채납처분'</u>----- -----</p>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이유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

주요 골자

- 의료보호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개정 (제2조 제1항 4호)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 의료보호법 제17조

- 16 -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중 '의료보호부조대상자' 를 '의료보호대상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사항) ①항 1. 2. 3 (생략)</p> <p>4. <u>의료보호 부조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 현황의 제공</u></p>	<p>제2조 (지원사항) ①항 1. 2. 3 (현행과 같음)</p> <p>4. <u>의료보호대상자</u> ----- ----- ---</p>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 이유

- 융자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 주요 골자

'1가구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1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로 개정
(제4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1가구당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를 '1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개정안
<p>제4조 (유자금액등) ①유자금의 유자액은 1가구당 2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p> <hr/> <p>② (생략)</p>	<p>제4조 (유자금액등) ①----- 1가구당 500만원이내로 한다.</p> <hr/> <p>② (현행과 같음)</p>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 이유

-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용자대상 변경(제6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를 저소득층자녀로
- 용자한도 및 이율변경(제8조)
용자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고, 대부이율은연 5 %에서 연 3 %로

□ 참고 사항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조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제7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학성적이 50 %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은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8조제1항중 '1천만원이하로 하되' 를 '2천만원이하로 하되'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연 5 %로 한다' 를 '연 3 %로 한다'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융자금 대부이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6조 (용자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 제7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고등학교는 30%이내 인자 실업계고등학교는 50%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 학점 이상) 인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p> <p>제8조 (용자한도및이율등) ①가구당 용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p> <p>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p>	<p>제6조 (용자대상) ① (현행과같음)</p> <p>②-----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50%이내인자로 하고 -----</p> <p>-----</p> <p>-----</p> <p>-----</p> <p>-----</p> <p>-----</p> <p>제8조 (용자한도및이율등) ① -----</p> <p>-----2천만원이하로 하되 -----</p> <p>-----</p> <p>②----- 연 3%로 한다.</p>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 정 이 유

-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지원에 부응하고자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조성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장학금지급대상자의 변경 (제2조)
자격을 저소득층 및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 장학금의 지급시기 '신설' (제5조의 2)
지급시기는 연 2회로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개정 (제7조)
일반회계지원금과 장학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수입에 의한

□ 참 고 사 항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저소득층 및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2 회 (3 월, 9 월)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과 장학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수입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u></p> <p><u>2.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u></p> <p><u>3. 기타 저소득층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u></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p> <p>----- <u>저소득층 및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u></p> <p><u>1. (삭 제)</u></p> <p><u>2. (삭 제)</u></p> <p><u>3. (삭 제)</u></p> <p>② (현행과같음)</p> <p><u>제5조의2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2회 (3월, 9월)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u></p>
<p>제7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u>일반회계지원금에 의한다</u></p> <p>② (생략)</p>	<p>제7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① -----</p> <p>----- <u>일반회계지원금과 장학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수입에 의한다</u></p> <p>② (현행과같음)</p>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 정 이 유

-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복지지원에 부응하고자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사회복지관 위탁운영기간 변경(제8조)
'3년' 을 '5년' 으로

□ 참 고 사 항

- 32 -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중 '3년으로 하되' 를 '5년으로 하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8조 (위탁운영) ① ② ③ (생략)</p> <p>④ 위탁운영기간은 <u>3년</u>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협약할 수 있다</p>	<p>제8조 (위탁운영) ①②③ (현행과같음)</p> <p>④-----<u>5년</u>으로 하되,----- ----- ----- -----</p>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 이유

-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우리구의 조직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변경된 기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장 과” 을 “(사)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회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으로 개정(제4조 제3항)
- “가정복지계장” 을 “노인복지계장” 으로 개정 (제4조 및 제9조)

□ 참고 사항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장과” 을 “(사)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 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 계장” 을 “노인복지계장” 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가정복지계장” 을 “노인복지계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정안
<p>제 4 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② (생략)</p> <p>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u>광주광역시</u> <u>서구노인복지회장과 노인복지에</u> <u>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u> <u>인정되는 자 중에서</u> 구청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p> <p>④ (생략)</p> <p>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가정복지계장이 된다.</u></p>	<p>제 4 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사) 대한노인회 <u>광주광역시</u> <u>서구지회장, 구의회에서 추천한</u> <u>의원 1인과</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노인복지계장</u> -----.</p>
<p>제 9 조 (회계관계공무원)</p> <p>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 출납원은 <u>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u></p> <p>② (생략)</p>	<p>제 9 조 (회계관계공무원)</p> <p>①----- ----- ----- <u>노인복지계장</u> -----.</p> <p>② (현행과 같음)</p>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 이유

공중화장실의 이용객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확립을 위하여 설치한 공중화장실중 서구에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공중화장실의 범위중 일부 호를 '삭제' (제4조)

- 9. 향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만의 종합여객시설
- 10. 유선 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 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참고 사항

- 40 -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9호, 10호, 1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p> <p>1. - 8 (생략)</p> <p>9. <u>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의 종합 여객시설</u></p> <p>10. <u>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u></p> <p>11. - 14 (생략)</p> <p>15. <u>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 시설</u></p> <p>16. (생략)</p>	<p>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p> <p>(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삭제)</p> <p>10. (삭제)</p> <p>11. - 14 (현행과 같음)</p> <p>15. (삭제)</p> <p>16. (현행과 같음)</p>	<p>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p> <p>(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삭제)</p> <p>10. (삭제)</p> <p>11. - 14 (현행과 같음)</p> <p>15. (삭제)</p> <p>16. (현행과 같음)</p>	<p>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p> <p>(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삭제)</p> <p>10. (삭제)</p> <p>11. - 14 (현행과 같음)</p> <p>15. (삭제)</p> <p>16. (현행과 같음)</p>	<p>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p> <p>(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삭제)</p> <p>10. (삭제)</p> <p>11. - 14 (현행과 같음)</p> <p>15. (삭제)</p> <p>16. (현행과 같음)</p>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장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 이유

자치시대 실시에 따라 우리구의 농가소득금고 운영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구민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융자한도액을 농가당 2,0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개정(제5조)
- 융자대부이율을 연 8%에서 연 5%로 개정(제5조)

□ 참고 사항

광주광역시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시구조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시구조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가당 2,000,000원”을 “농가당 3,000,000원”으로 하고,
제2항중 “대부이율은 연 8 퍼센트”를 “대부이율은 연 5 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 이유

붕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 개정되고 동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방단 조직,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재해예방,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수방단의 주요임무(안 제2조)
 -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발생시설(지역)에 대한 예찰, 경계,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함
- 수방단원의 조직(안 제3조)
 - 재해우려지역 거주주민, 재해관련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
- 수방단장 - 동, 출장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안 제4조)
- 수방단 편성 각 반별 인원과 임무를 정함(안 제5조)
 - 편성인원 :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내외, 구호반 10명내외

□ 참고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서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제23조제3항과 영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 3 조 (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 4 조 (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 5 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 6 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동 또는 자연부락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 다만, 동 또는 자연부락규모에 따라 2개 따라 2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동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 3 조 (기능) 수방단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정보의 전달 2. 방조제, 하천제방, 댐, 제방, 수문, 도로, 교량, 하수도, 축대, 기타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찰 및 경계 3. 재해위험자구에 있어서의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조립 및 복구와 장애물 등의 제거 4. 재해방사 및 구조 5.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6. 방역과 방법 기타 질서의 유지 	<p>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제23조제3항과 영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p>제 3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7. 방재의식 계몽 및 진파</p> <p>8.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p> <p>제 4 조 (조직) ①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50인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자 2. 방재와 관계있는 기관 및 기업체 소속 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제 5 조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②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한다.</p> <p>제 6 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본부,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반에 두는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단원 50명 기준시, 이하 같다) 	<p>②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p>제 4조 (단장)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②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p> <p>제 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가.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p> <p>나. 주민의 대피 안내</p> <p>다. 재해 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p> <p>라. 주민의 통제</p> <p>마.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p> <p>바.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p> <p>2. 복구반 : 30명 내외</p> <p>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조치</p> <p>나. 재해위험시설물의 긴급복구</p> <p>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p> <p>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p> <p>3. 구호반 : 10명 내외</p> <p>가. 재해민의 식량보급</p> <p>나.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p> <p>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p> <p>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p> <p>마. 기타 이재민의 사후처리</p> <p>제 7 조 (수방단원 제외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p> <p>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p> <p>2. 고교생 및 대학생</p>	<p>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p> <p>3. 구호반 : 10명 내외</p> <p>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p> <p>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p> <p>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p> <p>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p> <p>제 6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구청장은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 7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경찰관 및 군인</p> <p>4.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자</p> <p>제 8 조 (교육 및 훈련)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매년 4월 1일부터 5월30일 사이에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원의 긴급동원 2. 기상 및 재해의 예보 전달 3. 재해위험지구와 관계기관과의 연락 4.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응급복구나 장애물 등의 제거 5. 고립자, 부상자, 익사자 및 표류자 등의 구조 6.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7. 방재의식의 계몽 및 전파 8.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p>제 9 조 (동원절차) 풍수해대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원을 동원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소집통보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해야 하며,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단, 소집통보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마이크, 전화 등 유선시설을 이용하고 통지서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10조 (동원해제 및 보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은 그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하며, 응소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1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 이유

- 개별공시지가가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감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 및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이 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 골자

- 제6조의 1에 '제척 및 회피' 조항 신설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제척 및 회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3. 당해 토지에 대해 감정을 한 사람 또는 법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6조의 2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3. 당해 토지에 대해 감정을 한 사람 또는 법인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6년 12월 일

제안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 이유

- 통장의 사기양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알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장학생의 자격중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자로 (제2조)
- 장학생의 정원 통장정수의 30% 이내로 선정 (제5조)

□ 참고 사항

- 62 -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조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중 '2년이상' 을 '1년 이상' 으로 한다.

제5조중 '통장정수의 15% 이내' 를 '통장정수의 30퍼센트로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제2조</p> <p style="padding-left: 2em;">. . . 1년이상</p> <p style="padding-left: 2em;">.</p> <p style="padding-left: 2em;">.</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구당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p>	<p>제5조</p> <p style="padding-left: 2em;">. . . 통장정수의 30퍼센트이내 . . .</p> <p style="padding-left: 2em;">.</p>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 : 1996년 12월 일

제출자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 개정이유

1993. 6. 1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던 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 제4919호(95. 1. 5) 및 대통령령 제14891호(95. 12. 30)에 의거 개정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1. 도시건설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변경함(제4조)
2.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규정을 삭제함(제12조)
3. 미술장식품의 설치 규정을 삭제함(제20조)
4.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용어변경함
5. 일반주거지역내에 창고시설을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함(제23조)
6.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변경된 총포판매소, 당구장, 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에서 삭제함
7. 자연녹지지역내에 판매시설중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허용함(제34조)

□ 참고사항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도시건설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호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제4호중 ()안의 "1천㎡ 이하인 것에"를 "1천㎡ 이하인 박물관·미술관에"로 한다.

제23조제3호중 ()안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람집회시설(운동경기관람장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2백 제곱미터 이하인 공회장·회의장·예식장에 한한다)

13. 교정시설(구치소, 소년원과 감화원을 제외한다)

14. 창고시설(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안에서 운영하는 농협·임협·축협이 당해 지역에 설치하는 창고에 한한다)

제26조제7호중 ()안의 "총포판매소"를 삭제한다.

제27조제8호중 ()안의 "당구장"과 "및 노래연습장"을 삭제한다.

제28조제8호중 ()안의 "총포판매소"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에 "(공장 종업원용에 한한다)"를 삽입하고, 제4호중 ()안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며, 제5호중 ()안의 "전시장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1조제5호중 ()안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제11호중 ()안의 "일반공장에 한한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를 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32조제4호중 ()안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제8호중 ()안의 '임업'을 삭제한다.

제33조제4호중 ()안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34조제9호를 삭제하고, 제12호중 ()안의 '농산물공판장에 한한다'를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제64조제5항제2호중 '[1-(공개공지면적÷총대지면적)×공지기준]'을 '[1-(공개공지면적÷총대지면적)]×공지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성) ①(생략)</p> <p>②(생략)</p> <p>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생략)</p> <p>⑤(생략)</p>	<p>제4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사회도시위원회.....</p> <p>④(현행과 같음)</p> <p>⑤(현행과 같음)</p>
<p>제7조(소위원회) ①(생략)</p> <p>②(생략)</p> <p>③(생략)</p> <p>④소위원회의 책임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p>	<p>제7조(소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④(삭제)</p>
<p>제12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신청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신청용당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p> <p>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2조(삭제)</p>
<p>제20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구청장은 층수가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학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p> <p>2. 미관지구, 풍치지구, 시설보호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p> <p>②제1항에 의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검사전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제20조(삭제)</p>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 략)</p> <p>1. (생 략)</p> <p>2. <u>국민학교</u></p> <p>3. (생 략)</p> <p>4. 전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u>것에 한한다</u>)</p>	<p>제22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초등학교</u></p> <p>3. (현행과 같음)</p> <p>4. (..... <u>박물관·미술관에</u></p>
<p>제23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 략)</p> <p>1-2 (생 략)</p> <p>3. <u>교육연구시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시설은 제외한다)</u></p> <p>4-6 (생 략)</p> <p>7. <u>관람집회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2백제곱미터 이하인 공회장, 회의장 및 연면적의 합계가 1천2백제곱미터 이하인 예식장과 운동경기관람장에 한한다)</u></p> <p>8-12 (생 략)</p> <p>13. <u>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은 제외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3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초등학교.....)</p> <p>4-6 (현행과 같음)</p> <p>7. <u>관람집회시설 (운동경기관람장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2백제곱미터 이하인 공회장·회의장·예식장에 한한다)</u></p> <p>8-12 (현행과 같음)</p> <p>13. <u>교정시설 (구치소, 소년원과 감화원을 제외한다)</u></p> <p>14. <u>참고시설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안에서 운영하는 농협·임협·축협이 당해 지역에 설치하는 참고에 한한다)</u></p>
<p>제26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 략)</p> <p>1-6 (생 략)</p> <p>7.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총포판매소, 유독물판매소,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u></p> <p>8-12 (생 략)</p>	<p>제26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p> <p>1-6 (현행과 같음)</p> <p>7. (..... <u>액화가스취급소, 유독물판매소,</u>.....)</p> <p>8-12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p> <p>1-7(생략)</p> <p>8. 위락시설(당구장, 유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한다)</p> <p>9-18(생략)</p>	<p>제27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p> <p>1-7(현행과 같음)</p> <p>8. (유키장, 무도학원에 한한다)</p> <p>9-18(현행과 같음)</p>	<p>제28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p> <p>1-7(생략)</p> <p>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유독물관매소, 총포판매소,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p> <p>9-12(생략)</p>	<p>제28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p> <p>1-7(현행과 같음)</p> <p>8. (..... 유독물관매소, 지하에.....)</p> <p>9-12(현행과 같음)</p>	<p>제30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p> <p>1. 기숙사</p> <p>2-3(생략)</p> <p>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p> <p>5. 전시시설(전시장에 한한다)</p> <p>6-13(생략)</p>	<p>제30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p> <p>1. 기숙사(공장 종업원용에 한한다)</p> <p>2-3(현행과 같음)</p> <p>4. (초등학교,)</p> <p>5. 전시시설</p> <p>6-13(현행과 같음)</p>	<p>제31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p> <p>1-4(생략)</p> <p>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p>	<p>제31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p> <p>1-4(현행과 같음)</p> <p>5. (초등학교,)</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6-10(생략)	6-10(현행과 같음)
<u>11. 공장(일반공장에 한한다)</u>	<u>11.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를 넘는 것에 한한다)</u>
12-19(생략)	12-19(현행과 같음)
제32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생략)	제32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현행과 같음)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4.....(초등학교,
5-7(생략)	5-7(현행과 같음)
8.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2층이 아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8.....(.....농업, 축산업,.....)
9-11(생략)	9-11(현행과 같음)
제33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생략)	제33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현행과 같음)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4.....(초등학교,
5-13(생략)	5-13(현행과 같음)
제34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생략)	제34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현행과 같음)
1-8(생략)	1-8(현행과 같음)
9. 창고시설	(삭제)
10-11(생략)	10-11(현행과 같음)
1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공판장에 한한다)	12.....(.....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합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13(생략)</p> <p>제64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생략)</p> <p>②-④(생략)</p> <p>⑤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공지기준에서 감한 거리 : $[1 - (\text{공개공지면적} \div \text{총대지면적})] \times \text{공지기준}$</p> <p>3. (생략)</p>	<p>13(현행과 같음)</p> <p>제64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현행과 같음)</p> <p>②-④(현행과 같음)</p> <p>⑤.....</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p> <p>.. :</p> <p>.. : $[1 - (\text{공개공지면적} \div \text{총대지면적})] \times \text{공지기준}$</p> <p>3. (현행과 같음)</p>